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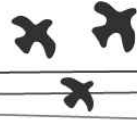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평생교육진흥원



차례



학점은행제 소개

- | | |
|---------------|---|
| 1.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7 |
| 2. 학위종류 및 전공 | 7 |

학위수여요건

- | | |
|---------------|----|
| 1. 학위수여요건 | 10 |
| 2.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12 |

학점취득방법

- | | |
|-----------------------------|----|
| 1. 평가인정학습과목 | 13 |
| 2. 학점인정대상학교 | 16 |
| 3. 시간제등록 | 18 |
| 4. 자격 | 20 |
| 5.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22 |
| 6. 중요무형문화재 | 24 |



학점인정기준

- | | |
|--------------------------------|----|
|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25 |
| 2.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26 |
| 3.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27 |
| 4.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 28 |

학점인정절차

- | | |
|--------------------------|----|
|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 31 |
| 2. 학습자등록신청 | 32 |
| 3. 학점인정신청 | 32 |
|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32 |
| 5.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33 |
| 6. 학위연계신청 | 33 |
| 7. 재심신청 | 34 |
| 8. 제출서류 및 수수료 | 35 |
| 9.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절차 | 38 |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 | | |
|---------|----|
| 1. 학위신청 | 40 |
| 2. 학위수여 | 41 |



증명서발급

- 1. 증명서 종류 42
- 2.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43
-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및 신청방법 44



학점은행제 상담

- 1. 전화 상담 45
 - 2. 온라인 상담 45
 - 3. 방문 상담 48
-
- ▶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처 49
 - ▶ 평생교육진흥원 오시는 길 50



표차례

<표 1> 학점은행제 제16차 표준교육과정 전공 : 학사	8
<표 2> 학점은행제 제16차 표준교육과정 전공 : 전문학사	9
<표 3> 학위수여요건	10
<표 4>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11
<표 5>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12
<표 6>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18
<표 7> 학위 종류별 인정 가능 자격 수	20
<표 8> 독학학위제 단계별 인정 학점	22
<표 9>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25
<표 10>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26
<표 11> 중복과목 판단의 일반적 기준	27
<표 12> 학점인정의 기준	28
<표 1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31
<표 14> 접수방법/신청내용별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35
<표 15>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절차	38
<표 16>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42
<표 17>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	44
<표 18>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시 학점원별 증빙서류	44
<표 19> 온라인 상담실 구분	46



그림 차례

<그림 1> 학점은행제 정의	6
<그림 2> 평가인정학습과목 검색 방법	14
<그림 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검색 방법	15
<그림 4>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 기준	17
<그림 5>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25
<그림 6> 학기의 구분	26
<그림 7> 학점인정절차	30
<그림 8> 학위신청절차 및 시기	40
<그림 9> 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	47



학점은행제 소개



<그림 1> 학점은행제 정의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①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진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② 이미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③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

2. 학위종류 및 전공

1) 학위

: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학 사: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 전문학사: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2) 전공

- ①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제16차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사 108개, 전문학사 109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에서 세부적인 전공 및 전공별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중 3년제 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료' 전공만 개설되어 있다.

※ 표준교육과정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고 있으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7차 표준교육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10023번을 참고하여야 한다.



<표 1> 학점은행제 제16차 표준교육과정 전공 : 학사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학사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1(2)
	간호학사	간호학	1
	경영학사	경영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3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향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29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14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사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8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5(6)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23개 학위, 108(110)개 전공			

* '전자계산학' 전공폐지는 2011년 9월 1일, '의상학' 전공폐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표 2> 학점은행제 제16차 표준교육과정 전공 : 전문학사

구분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전공	개수
전문 학사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48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4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산업예술 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18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생명산업 전문학사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의료전문학사	의료(3년제)	1
	행정전문학사	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13개 학위, 109개 전공			



학위수여요건

1. 학위수여요건

<표 3> 학위수여요건

구 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¹⁾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또는 과목수로 충족하여야 함.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²⁾
⑦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수여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된다.
- 2)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전공 유사성 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① 전공 : 전문적으로 이수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해당분야의 과목
 - 전공필수 :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 전공선택 : 해당 전공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과목
- ② 교양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
- ③ 일반선택 :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

❖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기술계학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 취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표4>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기술계학원에서 이수한 총 학점		교양학점 최소 이수학점
학사	8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문학사	65학점 이상(3년제)	1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2년제)	9학점 이상

※ 기술계학원은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기관유형별-기술계학원]에서 검색가능



2.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 ▶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5>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①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①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②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③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1)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하여야 함.
- 3)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 학력인정 각종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학교.

학점 취득 방법

- ▶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독학학위제, 중요무형문화제]가 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1)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 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을 받아 개설한 과목이다.

2) 학점인정의 기준

- 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②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 ③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3)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검색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 교양으로 고시된 학습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사 - 국어국문학 전공

가) 교육목표 학사 전공 중 국어국문학 전공 선택시

언어생활에서 제 언어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언어생활의 기틀을 마련한다. 또한 민족의 얼이 담긴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비평하여 민족의 의식세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나) 세부교육과정표 (전공필수 6 과목 / 전공선택 2 과목)

국문학개론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때 눌러주세요.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고시여부	개설교육훈련기관
				강의	실습		
전공필수		고정문학사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문학개론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국어학개론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문학개론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문학비평론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현대문학사	3	3	0	☑ 고시	🔍 교육훈련기관보기

국문학개론의 교수요목과 관련 전공을 알고 싶을 때 눌러주세요.

<그림 2> 평가인정학습과목 검색 방법

예시) [학사]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을 누르면, 학사 국어국문학 전공의 표준교육 과정이 나온다. 여기서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누르면 해당과목의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목명 우측의 [교육훈련기관보기]를 누르면 그 과목의 개설이 허가된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일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하단 [교육훈련기관검색]을 누르면 지역별, 기관유형별, 전공별, 과목별로 평가인정학습과목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 교육훈련기관 검색

<그림 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검색 방법

- ▶ [지역별]에서 [서울특별시]를 누르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기관들이 검색된다. 여기서 특정 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정보 및 개설된 평가인정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 ▶ [기관유형별]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유형별(대학부설사회교육원, 직업학교, 원격교육 등)로 검색할 수 있다.
- ▶ [전공별]에서는 학위구분, 학위종류, 전공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및 해당 기관의 개설 평가인정과목 수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전공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하는데 유용하다.
- ▶ [과목별]에서는 전체 평가인정 받은 과목이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과목명을 입력하면 교육훈련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2. 학점인정대상학교

1)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이란?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은 4년제 대학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 [학점인정대상학교]란?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①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②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③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⑦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⑧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학점인정의 기준

①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이수한 학점 중 과목 선택 혹은 학점을 절사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81학점을 취득하여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면 학점인정 신청 시 81학점 중 과목별로 선택하여 최대 8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외하고 싶은 과목이 2학점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②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중퇴한 학점에 한함)
- ③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 ④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당해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 ⑤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기준 적용
- ⑥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3) 학습구분 결정기준

- ①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 예) 대학 영어영문학과 재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 ②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그림 4>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 기준



3. 시간제등록

1)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사항은 시간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2) 학점인정기준

- ①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다.
- ② 1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된다.

<표6> 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근거조항	1개 대학 최대 이수 학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해당 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학점

- ③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이 적용된다.
- ④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된다.
- ⑤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09-5호)에 따르면, 2010년 2학기부터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원격수업을 이수할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60%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수업일수의 40%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677번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참고하여야 한다.

※ 100% 원격수업으로 과목 이수가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이 검색할 수 있다.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원격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 기관 검색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교육훈련기관검색 → 기관유형별 → 원격교육

2. 원격 대학에서 시간제등록과목 이수

☞ 원격대학 검색 방법: 커리어넷 홈페이지(www.career.go.kr) → 학교·학과정보 → 대학교 → 학교유형 → 사이버대학(2년제, 4년제)



4. 자격

1) 자격이란?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1일자로 고시된 ‘제15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르면, **총 576개 (국가기술자격 368개,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42개, 국가공인 민간자격 66개) 자격이 학점으로 인정된다.**

*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545번 ‘제15차 자격학점 인정기준’] 참고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평생교육진흥원장의 고시에 의해 변경되므로 반드시 현재의 기준을 확인 한 후,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학점인정기준

가)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 ①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1개 자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②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하다. 이때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표 7> 학위 종류별 인정 가능 자격 수

전문학사	학사	비 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만 인정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나) 동일직무 자격 간의 학점인정 기준

- ①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20개의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② 동일 등급 내에 여러 종목의 자격을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중복 시험 과목에 대해 적용하던 감산 기준은 2009년 3월 1일 이후 취득 자격부터 폐지한다. 단,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 간에는 동일 등급의 중복 시험 과목 감산을 적용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 자격에 대한 기준

- ①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변경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③ 통합 전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시행일 이후, 통합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합된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자격만 인정한다.

3) 학습구분 결정기준

- ① 전공 연계 자격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 ② 전공 연계 외의 자격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5.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1) 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이다.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학위취득종합시험)로 나뉘어 있고, 1~3단계는 시험합격 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마지막 종합시험(4단계)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해야 한다.

※ 시험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http://bdes.nile.or.kr>).

2)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이란?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 독학학위제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 해당 대학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독학학위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1단계~3단계 시험과목에 한하여 면제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3) 학점인정 기준

- ①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으로 인정한다.

<표 8> 독학학위제 단계별 인정 학점

단계	인정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과목 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과목 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과목 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과목 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②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하다.
- ③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이 적용된다.
- ④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의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한다.
 -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 ⑤ 전공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과목을 합격하더라도, 단계별 인정 가능한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4) 학습구분 결정기준

- ①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으로 인정된다.
 - ※ 단, 일부 과목은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가능
 -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합격 시 전공필수 혹은 교양으로 인정.
- ② 2단계~4단계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된다.



6. 중요무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이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를 인정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4조).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화생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학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 관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2) 주의사항

- ① 중요무형문화재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다.
- ② 전수생의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장이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하며, 일반회원으로 이수 받았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점인정주의사항

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학점 이수 시, 연간 또는 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표 9>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그림 5>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이 적용됨.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한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6> 학기의 구분

2.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습과정 이수자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

<표 10>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1년 5월 기준)

3.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 인정 가능함.

<표 11> 중복과목 판단의 일반적 기준

NO	기준	예시
1	의미가 동일한 과목	국사 = 한국사 인사관리 = 인적자원관리 e-비즈니스개론 = 전자상거래개론 스포츠생리학 = 운동생리학 드로잉 = 소묘 글로벌경영 = 국제경영
2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MIS = 경영정보시스템 전산개론 = EDPS 컴퓨터활용 = PC활용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 PS콘크리트
3	~이해 = ~개론 = ~입문 = ~학 = ~기초 = ~원론	경영학이해 = 경영학개론 = 경영학입문 = 경영학 = 경영학기초 = 경영학원론
5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8	[과목명] = [과목명]1 = [과목명] I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I

- ※ 상기 기준은 중복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이 외에도 각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복과목으로 판정할 수 있음.
- ※ 중복과목 판단 기준은 학점인정기준 및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 독학학위제 학습 과목은 응시단계가 다를 경우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음.
- ※ 이동학,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4. 학점원 별 학점인정 기준

<표 12> 학점인정의 기준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이수제한학점		중복 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1.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 2. 학습구분 ¹⁾ 결정기준 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인정 나.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	적용	적용	o														
학점인정 대상학교 교육과정	1.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2.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²⁾ 3.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당해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4. 학습구분 결정 기준 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 방식에 따름 나.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³⁾	적용 ⁴⁾	x	o														
시간제등록	1.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일	적용	x	o														
자격 ⁵⁾	1.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3.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전공 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x	x	x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혹은 시험면제 교육과정	1. 단계별 인정 학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구분</th> <th>인정 학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td> <td>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td> </tr> <tr> <td>2</td> <td>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td> <td>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td> </tr> <tr> <td>3</td> <td>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td> <td>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td> </tr> <tr> <td>4</td> <td>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td> <td>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td> </tr> </tbody> </table>	단계	구분	인정 학점	1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4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적용	o
단계	구분	인정 학점																
1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4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 1단계는 교양, 2~4단계는 분과위원회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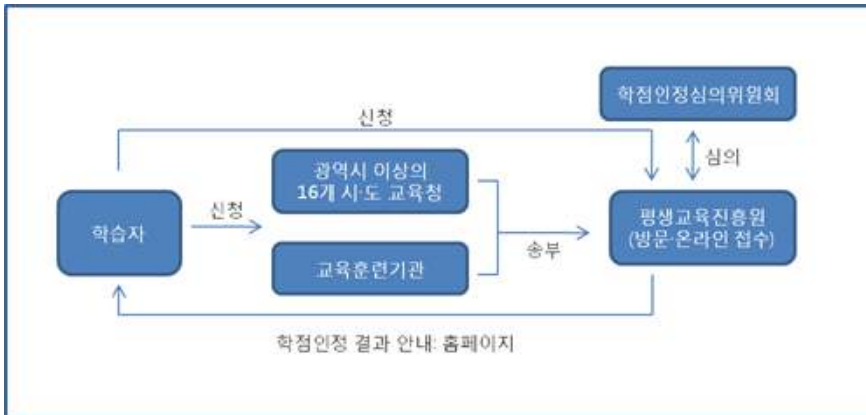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이수제한학점		중복 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																		
중요무형문 화재 보유자와 그 문학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	1. 등급별 인정 학점 ⁶⁾		x	x	x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학점</th> </tr> </thead> <tbody> <tr> <td>보유자</td> <td>140학점</td> </tr> <tr> <td>전수교육조교</td> <td>50학점</td> </tr> <tr> <td>이수자</td> <td>30학점</td> </tr> <tr> <td rowspan="4">전수생</td> <td>3년 이상</td> <td>21학점</td> </tr> <tr> <td>2년 이상</td> <td>14학점</td> </tr> <tr> <td>1년 이상</td> <td>7학점</td> </tr> <tr> <td>6개월 이상</td> <td>4학점</td> </tr> </tbody> </table>					등급	학점	보유자	14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이상	4학점
	등급	학점																				
	보유자	14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이상				4학점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 이수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필, 아닐 경우 일선																						

※ 이수제한학점과 중복판단 학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11페이지 참고

- 1) 학습구분은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으로 구분됨.
- 2) 성적이 D- 이상인 과목과 성적을 매기지 않고 이수 결과(P, S 등)만을 표기한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된 과목에 한해 인정되며, F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3) 해당 대학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상관없이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 4) 단,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 5) 자격학점인정 세부 기준은 20페이지 참고
- 6)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등급 명칭 및 인정학점은 중요무형문화재 선정일에 따라 다름. 1999년 7월 19일 이전의 경우, 보유자후보는 60학점, 전수교육조교는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는 50학점 인정되고, 1999년 7월 20일부터 2001년 9월 7일 기간 내 선정자의 경우 전수교육보조자는 50학점 인정됨. 나머지 등급(보유자, 이수자, 전수생)은 선정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학점인정 됨.



학점인정절차



학습자등록 | 처음으로 학점인정신청 할 경우
그 이전 자신의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 절차

학점인정신청 | 여러 학점취득방법에 따라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누적시키기 위한 절차

<그림 7> 학점인정절차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표 1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1. 16~1. 31 [② 12.15~1.15]	4. 1~4. 30	7. 16~7. 31 [⑧ 6.15~7.15]	10. 1~10. 31
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학점은행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방문 접수	1. 2~1. 15	4. 1~4. 15	7. 1~7. 15	10. 1~10. 15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15~1. 15	3. 21~4. 20	6. 15~7. 15	9. 21~10. 20

※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 위의 내용은 2011년 6월 기준임(2012년 접수일정 변경 가능하므로 학점은행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주의사항

- ① 위의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② 교육청 방문접수는 49페이지에 기재된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에서만 가능하다.
- ③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란,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평가인정기관을 통해 단체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수가능여부·시기·방법 등은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 ④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일자까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 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2. 학습자등록신청

1)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2월) 학위취득예정자는 전년도 4분기(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취득예정자는 2분기(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한다.
- ②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③ 외국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www.cb.or.kr>) 자료실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관련안내'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기 위한 신청절차이다.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온라인접수, 방문접수(평생교육진흥원,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를 할 수 있다.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8호서식]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면 학습자등록 혹은 인정학점의 취소가 이루어진다.

2) 주의사항

취소원 제출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의 학점인정 취소는 가능하나, 인정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5.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1)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등록 신청시 기재하였던 학위과정/전공과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주의사항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분기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전공변경신청이 처리되면 이미 인정받은 학점은 변경 신청한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습구분이 변경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6. 학위연계신청

1) 학위연계신청이란?

‘학위연계신청’이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 및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절차이다.

2)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미리 공지한 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만이 가능하다. 신청한 학위 과정으로 연계 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의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며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 ①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수여 이후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연계를 할 경우에는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80학점을 초과하여 취소할 학점은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다.
- ②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증 및 독학사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하다.

7. 재심신청

1) 재심신청이란?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신청 시 학습과목명을 기준으로 희망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된다.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할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강의계획서 등의 학습내용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에서 확인받은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제출서류 및 수수료

<표 14> 접수방법/신청내용별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접수 방법	신청 내용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수수료
온라인	학습자 등록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원본서류만 인정)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1982.1 ~)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www.neis.go.kr).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는 학사(전문)학위 졸업증명서(석사·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재적생은 재학(휴학)증명서(자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간호 및 보건자격취득확인서] 원본 제출(면허증 원본 제출시 반환되지 않음) ※ 보육자격 2급 이상 취득자가 아동학(아동·가족)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신청 할 경우 공지사항(730번) 참조할 것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 ※ 반드시 온라인 신청내용(신청서 및 별지)을 출력하고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와 함께 동봉하여 본원으로 등기우편 발송	4,000원 /1인당
	학점 인정 신청	※ 각 학점원별 증빙서류 (국문 원본만 인정) 가. 평가인정학습과목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 나.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 :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등 제출서류 없음 다.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제출 라.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1,000원 /학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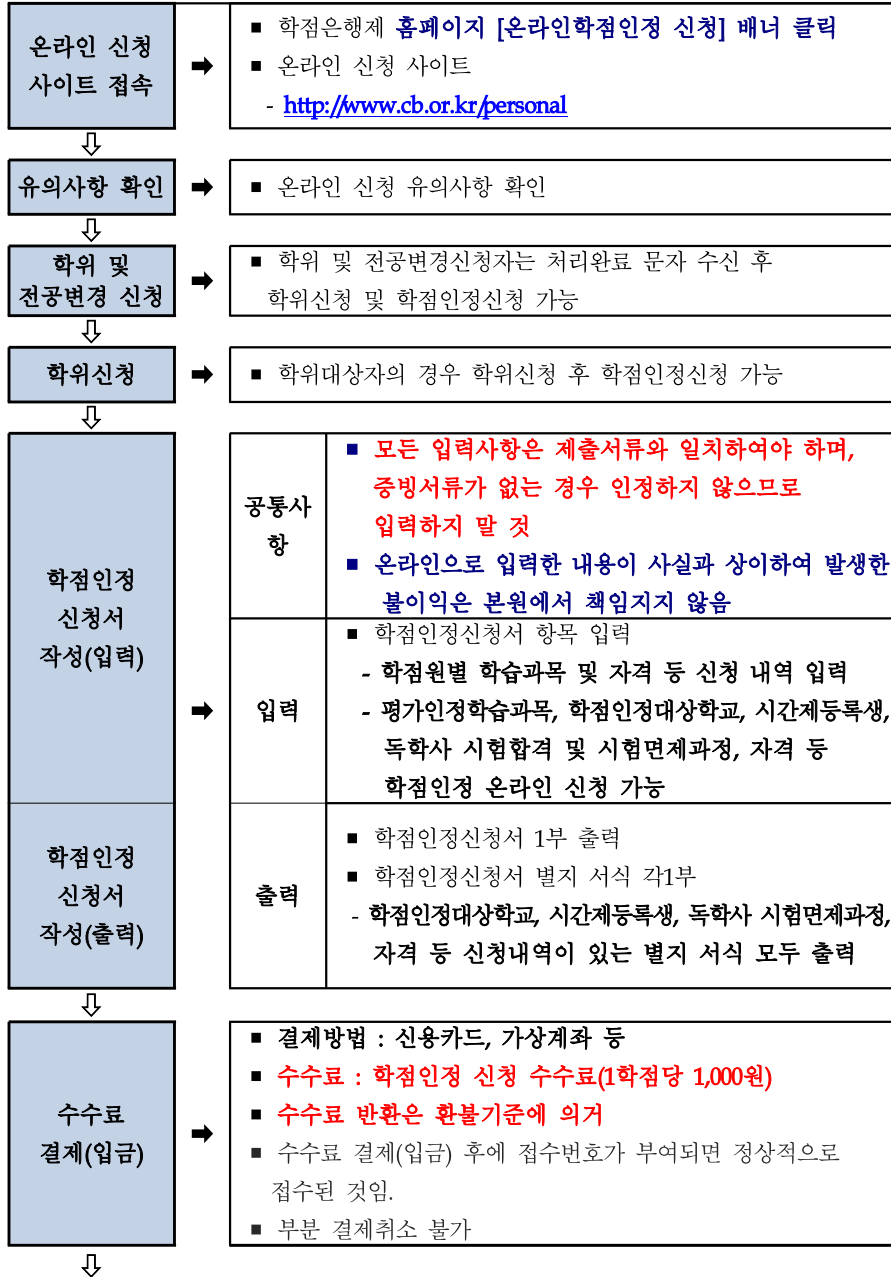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마. 자격 취득 (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자격: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 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자산관리사 : 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이 외의 자격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바.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학점인정신청서, 별지서식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반드시 온라인 신청내용(신청서 및 별지)을 출력하고 증빙서류(성적증명서 등)와 함께 동봉하여 본원으로 등기우편 발송 	
방문	학습자 등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자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신분증 사본 제출 3.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원본서류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 증명서 등을 말하며,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1981학년도 이후(1982.1 ~) 졸업자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www.neis.go.kr). -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는 학사(전문)학위 졸업증명서(석사·박사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에 학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최종학력증명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재적생은 재학(휴학)증명서(자퇴한 경우, 제적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구비서류는 콜센터(국번없이1600-0400)로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간호 및 보건의자격취득 확인서] 원본 ※ 이동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습자 중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는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 원본/사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4,000원 /1인당

	<p>1. 필수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학점원별 별지서식, 증빙서류</p> <p>2. 학점원별 증빙서류(별지서식 + 증빙서류 원본만 인정)</p> <p>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p> <p>나.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1부 -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p>다. 자격 취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원본 및 사본 1부 - 자격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p>라.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 1부 <p>마.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면제교육과정: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p>바. 중요무형문화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서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1,000원 /학점 당
학위연계/ 학위및전공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cb.or.kr/personal) - 팩스 및 시·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분기별 1회만 신청
학점인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점인정신청취소원 접수는 본원방문 및 팩스만 접수 가능 (FAX : 02-3780-9855) - 시·도교육청을 통한 접수는 불가 	



9.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절차

<표 15>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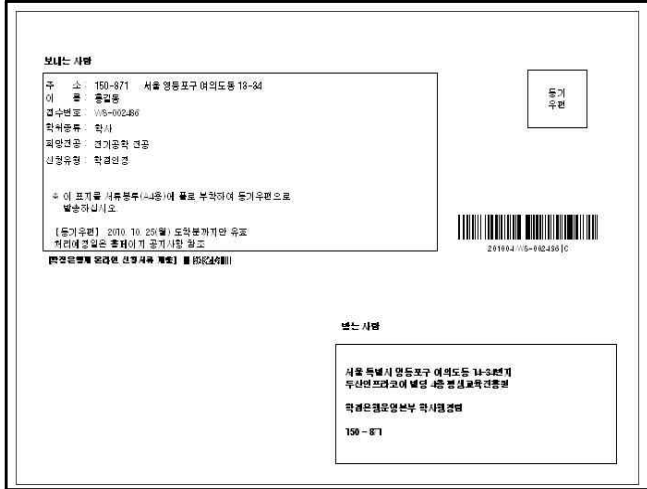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접수중] 출력

- 발송용 서류봉투(A4)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 제출서류 : ①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②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방문 제출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 학사행정실

※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② 제출서류 도착확인 :

-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우편물 조회', 『등기소포배달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각종 접수현황' 메뉴에서 서류도착, 미비서류, 처리완료, 환불내역 등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본원에서 서류도착, 미비서류, 처리완료 등 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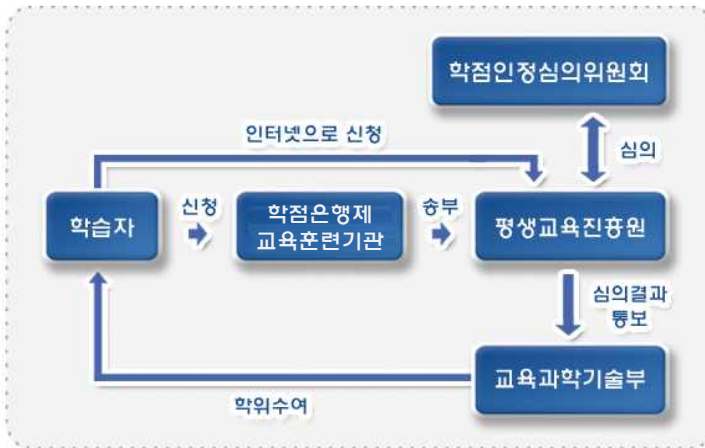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1. 학위신청

1) 학위신청이란?

학습자가 희망하는 학위/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림 8> 학위신청절차 및 시기

2) 학위신청방법

학위신청은 해당 기간에 홈페이지 ON System '학위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학위신청기간 후 접수가 완료되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학위신청을 해야 함.

3) 주의사항

- ① 학위신청은 학위수여대상자라면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 ② 학위수여대상자에 한해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대상자는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전기 학위신청자는 4분기(10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2분기(4월)에는 학습자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 학위수여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진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된다. 학위수여식 일정은 학위수여대상자가 확정된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

1. 증명서 종류

<표 16>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종류	내용	발급 형태	발급 방법
학위증명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국문 영문	방문 인터넷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주의사항③ 참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주의사항① 참고)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평점평균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사법시험 제출용)	사법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국문	방문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평가인정학습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단, 대학부설평생(사회)교육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		방문 인터넷

◆ 주의사항

- ①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증취득, 독학사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한번만 발급되는 졸업장과 같은 증서로서 본인 보관용 문서이다.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취득일 이후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 ③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은행제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9월부터 2월 학위수여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3월부터 8월 학위수여일까지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1) 방문 발급

- 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방(월~금 09:00~18:00, 학점인정신청기간에는 점심시간에도 운영)하여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② 발급수수료 : 국문 300원, 영문 500원/1통당 (단, 교육비납입증명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학점취득증명서는 발급수수료 없음)

2) 인터넷증명서 발급

- ① 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중앙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웹회원 아이디가 없는 학습자는 최초 로그인 시 기존 사용하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새로운 회원아이디를 생성해야 한다.
- ② 발급수수료: 증명서 수수료(국문300원, 영문 500원/1통당) + 인터넷발급 수수료 (최초 1통 500원, 동일증명서 추가는 1통당 100원)
* 결제방법: 휴대폰 결제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와 공인회계사시험제출용 학점취득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 증명서 발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명서발급 웹민원센터(1644-2378)로 문의하여야 한다.
단,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관련 문의는 평생교육진흥원 콜센터(1600-0400)로 하여야 한다.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및 신청방법

1)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증명서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학사과정: 100학점 이상 / 전문학사과정: 40학점 이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

2)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

<표 17>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방법

①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②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심사 신청 기인정학점 확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요건에 추가할 학점 저장 → 증빙서류 업로드
③ 학위수여요건 심사대기 심사검토 완료 시 학습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승인여부 확인 → 승인 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 미승인 시 [진행현황]에서 불가사유 확인

※ 학위신청일 이전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학위요건 심사 신청 후 승인된 자에 한 해 [학위신청] 절차를 완료한 이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3)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시 증빙서류

인정받지 않은 학점은 아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발급심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표 18>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시 학점원별 증빙서류

학점원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도 증빙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
자격증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독학학위 시험합격	별도 증빙서류 없음
독학학위 시험면제과정	과정 이수확인서

학점은행제 상담

1. 전화 상담

- 평생교육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1600-0400
- 해외 전화상담 : 82-2-2670-1800
82-2-2670-1900
- 이용방법 : 문의내용에 따른 번호 선택 후 [학번] 혹은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 [#] 입력 후 상담원 연결
 - 1번 :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원 연결
 - 2번 : 독학학위제 관련 상담원 연결
 - 3번 : 평생교육사 관련 상담원 연결
 - 4번 : 평생교육진흥원 위치 자동안내
 - 5번 : 문자상담 신청
- ※ 학번: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완료한 학습자,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하여 한 과목이라도 합격한 자에게 학번이 부여되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 ARS 도중 다시 들으려면 [*], 상위메뉴로 돌아가려면 [#] 버튼을 누르면 됨.
- 학습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음.
- 모든 상담내용은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후 부터 자동 녹취됨.

2. 온라인 상담

1) 온라인 상담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게시판]-[자주하는 질문&상담실]-[상담실 문의글 남기기]에서 문의사항에 따른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의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상담신청 후, 업무일 기준 2~7일 이내에 답변이 완료되며, 완료시 문자 혹은 이메일로 안내된다.



<표 18> 온라인 상담실 구분

구분		내용
제도안내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 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음. 단,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학점은행제 안내]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의할 수 있음.
학습설계	학습설계	학점은행제 시작 단계에서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이 어떻게 학점인정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취득 학점에 대한 정보입력 이후 희망전공에서의 각 학점이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인정되는지 안내받을 수 있음.
	중복과목	먼저, 홈페이지 중앙 주의사항 메뉴의 [중복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부분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간의 중복여부를 문의할 수 있음.
	학습구분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별료, 평가인정학습과목 외의 이수 예정 과목에 대해 인정되는 학습구분을 문의할 수 있음(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 이용).
학점취득방식	학점취득방법	6가지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행정사항	학점인정신청 /등록	학점인정신청기간, 신청한 학점의 처리유무, 환불사항 등과 같이 학점인정신청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2) 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이란, 개별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¹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학습 인정내역

희망학위

평가인정 학습과목

특학학위제 시험합격

특학학위제 시험면제

자격증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과목

상담신청

의심학위

학사(라관공)

전공

전기공학 전공

순서대로 진행

■ 상당선정학점내역

학습취득공통 충족하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명	학점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0
특학사 시험합격	0
특학사 면제	0
자격증	0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0
시간제등록	0
총계	0

* 위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에는 증명서 원본매조 일치 없이 학습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답변해 드리오니,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 입력될 경우, 상담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취득한 학점에 대해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입력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학습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학하신 계열과목, 자격증 등의 총 학점은 중복과목, 년간/학기당 이수제한학점 등의 이유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게시판-자주하는질문&상담실-상담실문의글 남기기 -학습설계-글쓰기]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536번 온라인 학습설계 매뉴얼] 참고

1. 현재 학점인정 내역 확인



2. 학점은행제 희망 학위 및 전공 선택



3. 취득원별 학점을 상담선택 혹은 신규입력
 (평가인정학습과목→특학학위제 시험합격→특학학위제 시험면제→자격증→학점인정대상학교→시간제등록과목)



4. 입력한 학점 재확인후, 상담신청 완료



3. 방문 상담

① 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학습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방문 학습자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온라인 및 전화 상담에 대해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예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예약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마이페이지-방문상담 예약/취소] 메뉴를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방문상담 시 구비서류

‘방문상담 예약증’과 보유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한다(모든 서류는 원본과 사본 각각 1부씩 제출하며 원본은 대조 후 반환함).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적자 : 성적증명서
- 대학 및 전문대학 시간제등록 이수자 : 성적증명서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과정 이수자 : 과정이수확인서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대리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상담이 가능하다.

- 위임장 1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472번 방문상담위임장)
-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기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처

구 분	전 화	우편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0	110-78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2-77)
부산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51)8600-476	614-8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양정1동 455-1)
대구광역시 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053)757-8506	706-70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수성2가 119-2)
인천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32)420-8275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광주광역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2)380-4386	502-704	광주광역시 서구 화랑로 116 (화정동 657-37)
대전광역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2)480-7706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울산광역시 교육청 (총무과)	052)210-5400	681-703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1층 고객지원팀(유곡동)
경기도 교육청 (제1청사-평생체육건강과)	031)249-0587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평생교육과)	031)820-0534	480-844	경기도 의정부시 호곡로 1287 (의정부동 224)
강원도 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033)258-5106	200-14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시농동)
충청북도 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	043)290-2223	361-70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남도 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042)580-7272	301-70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문화동 279-2)
전라북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3)239-3366	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번지
전라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1)260-0656	534-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남악리 1457번지)
경상북도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053)603-3374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산격동 1111-4)
경상남도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055)268-1237	641-71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용호동 6-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64)710-0282	690-7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연동 311-46)

(2011.5 .현재)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발 행 2011년 6월

발행인 최 운 실

발행처 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전화: (국번없이)1600-0400 팩스: (02)3780-9837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평생교육진흥원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4 두산인프라코어빌딩 4층
Tel : 1600-0400 / Fax : 02)3780-9837 / <https://www.cb.or.kr>